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95
----------	-------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강승규 · 김선교 · 김용태
김미애 · 박준태 · 이상휘
조배숙 · 임이자 · 나경원
박정하 · 조지연 · 박충권
강명구 · 최수진 · 서지영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을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회에 지역농협 등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은 회원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중앙회장 선출에 참여함으로써 회원조합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앙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인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조합감사위원회는 중앙회 소속으로 회원 조합에 대해 지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감사위원의 선출, 직원 인사·예산편성 등과 관련하여 독립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선출에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참여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등).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3호 중 “선출”을 “선출(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30조제1항 전단 중 “총회에서”를 “회원의 선거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선거를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선거에 대하여는 중앙회와 협의 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중앙회 회장 선거) ① 회장 선출을 회원의 선거(이하 “회원선거”라 한다)는 총회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한다.

② 회장 선출을 위한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선거(이하 “조합원선거”라 한다)의 선거권은 선거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 현재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되, 조합원은 1표의 선거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조합원선거에서 하나의 조합을 통해서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를 회원 투표의 전체 유효투표수로 나누어 회원 투표 득표율을 산정하고, 그 득표율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회원투표 환산득표율을 산정한다.

④ 조합원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를 조합원 투표의 전체 유효투표수로 나누어 조합원 투표 득표율을 산정하고, 그 득표율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조합원 투표 환산득표율을 산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회원선거에서 환산득표율과 제4항에 따른 조합원 선거에서의 환산득표율을 합산한 최종 환산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최종 환산득표율이 같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투표방법·절차, 당선자 결정 등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제4항 중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를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소속된 직원의 승진·임명·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

과”로, “승진·전보 및 인사 교류에”를 “채용·임면·승진·전보·징계 및 인사 교류에”로,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또는”으로 한다.

제14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회 감사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명
3.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1명
4.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2명

④ 조합감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중앙회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감사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조합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는 “조합감사위원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144조제1항 본문 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5조의2(규칙의 제정) 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조합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회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원,”을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회 임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 회장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 2. (생 략) 3.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u>선출과 해임</u> 4. · 5. (생 략)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선출(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u> <u>장 선출은 제외한다)</u> ----- 4. · 5. (현행과 같음)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u>총회에서</u>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u>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u> <u>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u> <u>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u> <u>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u> <u>표까지 행사한다.</u> ② ~ ⑦ (생 략) ⑧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 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 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 <u>회원의 선거와 회원</u> <u>인 조합의 조합원 선거를 병행</u> <u>하여 실시한 결과에 따라</u> ----- ----- ----- . <u><후단 삭제></u>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 <u>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u> <u>회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선</u>

⑨ ~ ⑪ (생략)

<신설>

거에 대하여는 중앙회와 협의 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130조의2(중앙회 회장 선거) ①

회장 선출을 회원의 선거(이하 “회원선거”라 한다)는 총회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한다.

② 회장 선출을 위한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선거(이하 “조합원선거”라 한다)의 선거권은 선거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 현재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되, 조합원은 1표의 선거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조합원선거에서 하나의 조합을 통해서만 선거

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를 회원 투표의 전체 유효투표수로 나누어 회원 투표 득표율을 산정하고, 그 득표율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회원투표 환산득표율을 산정한다.

④ 조합원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를 조합원 투표의 전체 유효투표수로 나누어 조합원 투표 득표율을 산정하고, 그 득표율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조합원 투표 환산득표율을 산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회원선거에서 환산득표율과 제4항에 따른 조합원선거에서의 환산득표율을 합산한 최종 환산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최종 환산득표율이 같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후보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 ③ (생략)
 ④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행한다.

⑤ · ⑥ (생략)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 (생략)
 ②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자가 1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투표방법·절차, 당선자 결정 등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소속된
직원의 승진·임명·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과-----

 ---채용·임면·승진·전보·
징계 및 인사 교류에-----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또는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신 설>

<신 설>

다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으로 하되,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하
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앙
회 감사위원 이외의 임직원으
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
하는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
는 1명

3.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
천하는 1명

4.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2명

③ (현행과 같음)

④ 조합감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중앙회의 예산에 계
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감사위원회의 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조합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① 조합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提請)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회계 또는 농정(農政)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는 “조합감사위원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서 삭제>

② 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

-----.

<삭 제>

④ (생략) <신설> 제171조(벌칙) 조합등과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7.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5조의2(규칙의 제정) ① 조합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조합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회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1조(벌칙) ----- -임원 및 조합감사위원회 임원, ----- ----- ----- ----- ----- ----- -----. 1. ~ 17. (현행과 같음)
--	---